

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9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(2001. 9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개발과장 차 암 길)

가. 제안이유

- 육교에 홍보물 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1항11호의 규정에 금지 사항으로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본 폐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신 덕 찬)

- 본 조례 폐지안은 1997. 6. 16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홍보물 난립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육교이용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할 뿐만 아니라,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치구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상위법 위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.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,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
- 최근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10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·장소 등) 1항11호에 명백히 법령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고,
- 또한 육교에 각종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광고제도 수립을 위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

없다고 생각되어 따라서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
생각되며,

○ 다만 조례 폐지 후 육교를 이용한 광고주들의 편익과 민원불편을 최소화
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 타 사 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

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